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2조(잠정인증의 심사 등)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<생략></p> <p>제19조(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) ① ~ ④ <생략></p>	<p>제12조(잠정인증의 심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. <u>다만,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19조(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) ① ~ ④ <생략></p>	<p>○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한 타 업체가 잠정인증 신청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체 부담 해소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⑤ <신설></p> <p>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.</p> <p>제26조(처리기간)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⑤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 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·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 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.</p> <p>제26조(처리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, 통관 시 추가적인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</p> <p>- 현재,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(7.28) 후 관세청 협의 하에 세관의 면제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있음</p> <p>※ 관련 문서</p> <p>○ 혁신행정담당관-2312(2021.7.28., 2021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)</p> <p>○ 전과기반과-1402(2021.8.2.,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관련 협조 요청)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. ~ 3. <생략></p> <p>4. <u>60일</u> 이내 처리 :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</p> <p>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 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<u>30일</u>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<단서 생략></p>	<p>1. ~ 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<u>30일</u> ----- :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5일</u>의 ----- -----.</p> <p><단서 현행과 같음></p>	<p>○ 잠정인증 처리기간을 60일 → 30일로 단축하여 기업체의 인증 부담 해소</p> <p>○ 전문적 기술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1회 연장 기간을 30일 → 15일로 단축</p>